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96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의의원 : 이연숙 의원,

서도원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영유아들이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해 쉽게 노출되면서 해당 서비스에 과몰입·과의존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영유아의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달성군의 영유아·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를 과의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놀이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호)

다. 놀이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 군에 소재하면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다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영유아 발달 지원” 을 각각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상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 비용 지원
2.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 또는 보육기관 종사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4.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 가족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p> <p>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3.·4.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삭제〉</p> <p>〈삭제〉</p> <p>3.·4. (현행과 같음)</p> <p>5.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로 한다.</p> <p>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p> <p>2. 군에 소재하면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p> <p>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p>

제5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다음 ----.

1. 지원 -----

2. 지원 -----

3. 지원 -----

4. 지원 -----

5. ----- 지원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상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 비용 지원
2.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 또는 보육기관 종사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4.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 가족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 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 「영유아보육법(법률)」(2024.3.19. 일부개정, 2024.9.20.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법률)」(2023.7.18. 타법개정, 2025.7.19. 시행)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 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2024.3.26. 일부개정, 2025.3.2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법률)」(2023.9.27. 일부개정·시행)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조례)」(2025.7.10. 일부개정·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이 연 속 (☎ 2056)